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방식 변경〉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86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양수 · 박덕흠 · 정희용 · 김소희 · 이인선 · 김승수
이종욱 · 김선교 · 권영진 · 배준영 · 이종배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 의안번호 : 698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견이 큰 안전의 조정이라는 안전조정위원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속한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제기됨. 이는 제1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가 같도록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전 처리를 도모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을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

위원 등은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는 날 이후 당적을 취득·이탈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u>조정위원회가 제1교섭 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 여</u>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u><후단 신설></u>	⑤ ----- ----- ----- <u>조정위원 중에서 위원 장과 간사의 합의로 정하여</u> ----- ----- <u>. 이 경우 제1항 에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 은 후에 당적을 취득 또는 이탈하거 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위원은 조정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u>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안전조정제도는 여야 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한 쟁점 안전에 대하여 여야 간의 숙의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소위 ‘국회선진화법’(2012. 5.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음.

현행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힘

든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됨. 조정위원 6인 중 3인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으로, 나머지 3인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으로 하며,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함.

안전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전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결함.

[표-2] 안전조정위원회 개요

구 분	주요내용
구성목적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심사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
구성절차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
활동기한	구성일로부터 90일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6인 -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 -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이외의 위원: 3인 * 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
조정안 의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표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전을 표결

개정안은 과거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에 탈당하여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이외의 위원’으로서 조정위원에 선임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의 선임방식

을 변경함으로써 동수로 구성하는 안전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안전조정위원회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원의 당적 변경을 방지하고,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¹⁾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조정위원장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는 ‘협의’와 달리 ‘합의’는 협상 당사자 모두

1) 참고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인의 의견(전부인용 4인, 일부인용 1인)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대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①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②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인용의견 중 일부(재판관 4인(전부인용) 중 발췌) >

- 위와 같은 ○○○ 위원의 탈당 과정과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조정위원 선임과정 및 법사위 위원 구성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 위원은 법사위에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되어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하여 민주당을 탈당하였고 같은 당 소속으로 ○○○ 위원과 함께 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찬성자로 참여하였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이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위와 같이 회의의 주재자로서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그 위원회 활동의 일부인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두었고 조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질의토론이 모두 생략되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의결된 조정안에 대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나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 조정안의 내용 그대로 이 사건 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다.
- 이는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수와 그렇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고 제 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 3명과 ○○○ 위원만으로 제적 조정위원 6명의 3분의2인 4명이 충족되도록 함으로써 국회 내 다수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의 기능을 형해화한 것이며 위원회의 안전심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58조도 위반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이를 통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법사위 법안심사에서의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형해화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49조도 위반하였다.

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므로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위원장 선출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음.

특히,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의 기산점이 안건조정요구서 제출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²⁾ 위원장 선임이 지연될 경우 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단축되어 위원회 심사가 형해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³⁾ 상 일반적인 위원장 선임방식은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선거 등을 통하여 선출하거나 호선하는 것임.

둘째,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이후 당적이 변경된 위원의 경우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의 당적 변경 사유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위원 선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15

2)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3)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57조(소위원회)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조사위원회)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